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62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안도결 · 전진숙 · 조계원  
이언주 · 박지혜 · 김우영  
이용선 · 윤준병 · 정진욱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